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23
----------	-------

발의연월일 : 2026. 1. 29.

발 의 자 : 서미화 · 박정현 · 김병주
김승원 · 서영석 · 이성운
이정문 · 이연희 · 조계원
이수진 · 김남희 · 백선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상의 규정들은 자산 운용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집합투자기구가 대다수의 수익자·주주 또는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에 투자자들의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의 정당한 권

리 행사 및 의견 제시가 일상적인 운용지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법에 명시하고,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집합투자자총회에서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발행주식총수 또는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결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188조제2항제2호, 제249조의8, 제249조의13제6항 및 제446조제41호의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투자자들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절차 진행, 투자자들의 집합투자기구 존속기간의 변경 절차 진행, 주요 투자자산 취득 또는 매각에 관한 투자자들의 의견 제시 등 투자자들이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는 일상적인 운용 지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88조제2항제2호 중 “신탁업자”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 한다.

제249조의8제1항 중 “제188조제2항·제3항”을 “제188조제2항·제3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195조”를 “제195조(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로, “제211조제1항”을 “제211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16조제1항”을 “제216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

으로, “제217조의6제1항”을 “제217조의6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22조제1항”을 “제222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27조제1항”을 “제227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투자신탁의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유 불문하고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2. 투자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유 불문하고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3.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또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유 불문하고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원총회는 발행된 지분증권 총 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4. 투자합자조합의 경우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유 불문하고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조합원총회는
발행된 지분증권 총 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5.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익명조합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유 불문
하고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익명조합
원총회는 발행된 지분증권 총 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결의한
다.

제249조의13제6항 전단 중 “제249조의8제2항제5호”를 “제249조의8제3
항제5호”로 한다.

제446조제41호의3 중 “제249조의8제2항”을 “제249조의8제4항”으로 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금융투자업) ① ~ ④ (생략)	제6조(금융투자업) ① ~ ④ (현재와 같음)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후단 신설>	⑤ ----- ----- ----- ----- ----- ----- ----- ----- ----- ----- <u>. 이 경우 투자자들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절차 진행, 투자자들의 집합투자기구 존속기간의 변경 절차 진행, 주요 투자자산 취득 또는 매각에 관한 투자자들의 의견 제시 등 투자자들이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는 일상적인 운용지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생 략)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 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 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 다.	②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신탁업자의 변경</u> (합병·분할 ·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 는 경우를 제외한다)	2. <u>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u> ----- -----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 구에 대한 특례) ① 제76조제2 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 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 구에 대한 특례) ① ----- ----- ----- -----

조제7항·제8항, 제239조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
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
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241
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
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
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2
48조 및 제253조는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
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
에 따른다)-----제2
16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
2항에 따른다)-----
-----제217조
의6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
2항에 따른다)-----
제222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
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
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
--제227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
는 제2항에 따른다)-----

<신 설>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투자신탁의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유 불문하고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
를 변경할 수 있으며, 수익자
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
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결
의한다.

2. 투자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유 불문하고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② ~ ⑨ (생략)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① ~ ⑤ (생략)	3. <u>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u> <u>또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경</u> <u>우 사원총회 결의를 통하여</u> <u>이유 불문하고 집합투자업자</u> <u>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u> <u>있으며, 사원총회는 발행된</u> <u>지분증권 총 수의 4분의 3 이</u> <u>상의 수로 결의한다.</u> 4. <u>투자합자조합의 경우 조합원</u> <u>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유</u> <u>불문하고 집합투자업자 또는</u> <u>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u> <u>며, 조합원총회는 발행된 지</u> <u>분증권 총 수의 4분의 3 이상</u> <u>의 수로 결의한다.</u> 5. <u>투자익명조합의 경우 익명조</u> <u>합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u> <u>유 불문하고 집합투자업자 또</u> <u>는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u> <u>으며, 익명조합원총회는 발행</u> <u>된 지분증권 총 수의 4분의 3</u> <u>이상의 수로 결의한다.</u> ③ ~ ⑩ (현행 제2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	--

⑥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184조제3항·제4항 및 <u>제249조의8제2항제5호</u>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은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으로 본다. ⑦ (생략)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1의2. (생략) 41의3. <u>제249조의8제2항</u>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1의4. ~ 64. (생략)	⑥ ----- ----- ----- ----- -----<u>제249조의8제3항제5호</u>----- ----- ----- ----- -----. ⑦ (현행과 같음) 제446조(벌칙) ----- ----- ----- ----- -----. 1. ~ 41의2. (현행과 같음) 41의3. <u>제249조의8제4항</u>----- ----- ----- 41의4. ~ 64. (현행과 같음)
--	---